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5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윤후덕·김준형·정준호

김정호 · 홍기원 · 김병주

임오경 · 김주영 · 박수현

이기헌 • 김태선 • 김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이 안정적인 보호 및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나온 후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 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과 가족 유형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 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항제5호 중 "소득"을 "가족 유형 및 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 ②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③		
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			
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소득</u> ·지출·자산 등 가족의	5. <u>가족 유형 및 소득</u>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u><신 설></u>	6.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